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방위산업발전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은 현행 법률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방위산업의 인적·물적 자원과 방위산업체 등의 생산·매출 및 수입·수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신용평가서 또는 경영정보 파악이 곤란하여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실태 조사가 곤란하므로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의 경영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과 방산수출 금융지원 및 현용장비 시범운영 등 방산수출 추진간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수품의 정부품질인증 부여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 국세청장

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6항제2호에서 규정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를 위한 인증기관지정 및 인증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2. 각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방산금융분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상근 부회장

제3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인증
부여

부 칙

이 영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② (생략)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5. (생략) <u><신 설></u>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 <u>국세청장</u>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제2호에서 규정한 정부품질인증 부여를 위한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①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되
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
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
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2.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위원장이 협의회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현행과 같음)

② -----

-----.

1. -----
----- 산업통
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 각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
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방산
금융분야), 한국방위산업진흥
회의 상근부회장

4. 국무조정실 -----
--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 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② · ③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u> <u>실시하는 군수품에 대한 정부</u> <u>품질인증 부여</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748 - 5613